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30.(화) 11:00,
(지면) 2023. 5. 31.(수) 조간

배포 2023. 5. 30.(화) 06:00

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사례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해수부 지원계획 설명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5월 31일(수)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·단체*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**를 개최한다.

* 해운업, 항만운송업, 어업·수산업,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

** 전남(5.31), 강원(6.9), 경남(6.22), 수도권(6.15, 7.4), 울산(7.13), 전북·충청(7.20), 경북(8.30)

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적용*되는 △50인 미만 사업장, △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, △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.

* (기존) 50인 이상 사업장, 50억 이상 공사 등 → (확대) 5~49인 사업장 등(2024. 1. 27.~)

또한,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‘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,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.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*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안전취약분야 표준 매뉴얼(7종) 배포, 사업장 안전·보건 지도 및 교육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적용되는 만큼,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,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해사안전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전해진 (044-200-6074)

□ **설명회 개요**

- (일자/장소) '23. 5 ~ 8월 / 부산·경남, 전남, 강원 등 전국 7개 권역
- (참석대상) 해양수산 업·단체
 - * 해운업, 항만운송업, 어업·수산업,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
- (주요내용) 중대재해처벌법 개요·최근판례 소개, 중대재해 주요 정책동향 전파,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실시

【 설명회 세부일정(안) 】

회 차	일 자	권 역	장 소	비 고(참석업체 관할지방청)
1차	5.31.(수) 14:00~17:00	전 남	여수시 문화홀	여수·목포지방해양수산청
2차	6.9.(금)	강 원	동해	동해지방해양수산청
3차	6.15.(목)	수도권	평택	평택지방해양수산청
4차	6.22.(목)	경 남	마산	부산·마산지방해양수산청
5차	7.4.(화)	수도권	서울(인천)	인천지방해양수산청
6차	7.13.(목)	울 산	울산	울산지방해양수산청
7차	7.20.(목)	전북·충청	대산	대산·군산지방해양수산청
8차	8.30.(수)	경 북	포항	포항지방해양수산청

*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** 관할 지방청에서 장소·시간 등 확정 공문 시행 예정

□ **참고 사진**



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('23. 4. 27, 부산지역)